

# 관리단체 운영규정

제정 2021.09.24.

개정 2023.09.07.

**제1조(근거 및 목적)** 본 규정은 경북체육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 정관 제9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본회 회원종목단체(이하 “종목단체”라 한다)에 한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관리단체 지정의 통지)** 본회는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즉시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 해당 종목단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통지한다.

<개정 2023.09.07>

1. 관리단체 지정사유
2. 관리단체 지정일
3.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
4. 임원인준 취소
5. 그 밖의 주요사항

**제4조(관리단체 지정의 효력)** ① 관리단체로 지정 받은 당해 종목단체의 대의원총회, 이사회, 사무국 등 종목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, 본회가 종목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.

② 당해 종목단체 임원·선수 및 기타관계자(이하 “종목단체관계자”이라 한다)는 종목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당해 종목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회의 의사결정 및 사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.

③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종목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종목 단체에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통지하고 해당 관리단체는 통지를 송달받는 즉시 본회 회원종목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한다.<개정 2023.09.07>

**제5조(종목단체 관계자의 의무 등)** ①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 관계자는 관리단체로서 본회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본회의 각종의사 결정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본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② 종목단체 관계자는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조달, 사무공간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09.07>
- ③ 본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종목단체 관계자는 즉시 징계 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.<개정 2023.09.07>
- ④ 종목단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당해 종목단체가 정상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09.07>

- 제6조(관리위원회의 설치)** ① 본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개정 2023.09.07>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3.09.07>
  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,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.<개정 2023.09.07>
  -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본회 직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한다.

- 제7조(위원회의 기능)** ① 위원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의 다음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.<개정 2023.09.07>
- 1.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
  - 2.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
  - 3. 법제·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
  - 4.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
  - 5. 종목단체 규약에 규정된 사업 및 종목단체와 관련된 모든 사항<개정 2023.09.07>
- ② 위원회는 해당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단체의 대의원총회 개최 및 임원 선임 등의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.<신설 2023.09.07>

- 제8조(위원회의 운영)**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<개정 2023.09.07>
- 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.<개정 2023.09.07>
  - 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.<신설 2023.09.07>
  - 3.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<개정 2023.09.07>
  - 4.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개정 2023.09.07>
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위원에게 소관업무를 나눠 맡아 처리하게 할 수 있다.<개정 2023.09.07>

③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종소위원회(경기위원회, 심판위원회, 상벌위원회 등)를 둘 수 있으며, 각종소위원회의 명칭과 소위원회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.<개정 2023.09.07>

**제9조(준용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회 정관 및 그 밖의 규정을 준용한다.  
<개정 2023.09.07>

## 부 칙 (2021.09.24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시행 전 구성된 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.

## 부 칙 (2023.09.07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